

(앞쪽)

제	호	사 진 2.5cm × 3cm
조사 · 검사원증		
소	속	
성	명	
직	급	
생년월일		
위 사람은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58조·제61조 및 제69조에 따라 뒤쪽에 적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직인		

65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1.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,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(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58조제3항·제61조제1항) 2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을 적용 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,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업무(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69조제1항) 3.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·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는 업무(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69조제2항) 4.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하는 업무(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69조제3항)
--